

A Note on the Draft Amendment of Library Law

圖書館法 改正案에 대한 管見

—大學圖書館 分野를 中心으로—

崔 昌 均

(中央大 圖書館)

I. 머리말

圖書館法 改正論은 오래전부터 學論되어 왔고, 改正論의 焦點도 이미 浮刻되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間 改正論議를 통해서 改正의 必要性이 周知되어 있으며, 「도협월보」를 통해서 改正案의 要旨도 公表되었다. 晚時之歎의 感은 없지않으나 圖協行政分委가 改正論議에 나타난 館界의 興望을 集約하고 關係分野 人士들의 意見을 參酌하여 圖書館法(同施行令)의 改正案을 作成하였는데, 보다 完璧을 期하고 館界의 總意를 더욱 集約하고자 公聽會를 開催할 計劃을 세웠으나 如意치 못하여 紙上公聽會 形式을 받게 되었고, 筆者를 大學圖書館 分野에 대한 所見發表者로 指名하였는데 天性이 優柔不斷하여 適格者가 아닌줄 알면서도 拒絕하지 못하였다.

請託을 받고서야 그間的 改正論 또는 問題點으로 發表된 關係文獻을 參考하고 改正案과 對比하여 체크해 보았더니 主要事項은 빠짐없이 條文化하였다고 보아진다. 또한 本改正案이 全面改正의 形式을 취하지 않고 現行法의 테두리 안에서 理想과 現實을 調和시키는 方法을 擇하였다고 보아지는데 이 方法은 全面改正보다 어려운 作業이라고 생각된다. 作業은 어려워도 法律案 通過의 쉬운 方向을 模索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條文의 表現이 舊態依然하고, 形式이 同一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圖書館資料라는 用語는 除外)

筆者가 알고 있는 圖書館法의 常識으로는 圖書館法에 있어서의 核心은 國家의 圖書館政策 即 公共圖書館에 관한 것이다. 本 改正案은 大學圖書館 分野를 獨立「章」으로 하여 大學設置基準令으로부터 一元化하는 圖書館法 單一體系化를 試圖하였는데 그 趣旨에 首肯이 간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韓國高等教育은 最近 數年間 改善해 보고자 하는 胎動이 일어나고 있다. 實驗大學으

로 集約 表現되는 課題學習과 課題圖書室, 卒業論文制 實施 即, 自律學習에 의한 勉學風土의 助成이 圖書館과 크게 聯關되는 部分인 것이다. 이러한 理想을 實現하기 위하여 圖書館(的)教育이 必要하며, 이에 따르는 專門司書와 施設, 資料의 擴充이 가장 緊急한 當面課題로 登場된 것이다.

이러한 當面課題에 대한 條文이 빠짐없이 圖書館法에 나타내졌다면 一段 훌륭한 圖書館法이라고 大學圖書館의 立場에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法律이란 單純히 現實의 秩序나 効用性만을 追求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지만 現在로서는 別道理가 없는 것으로 前提하고, 改正案中 大學圖書館에 直接的으로 關係되는 部分만을 論及하고자 한다.

II. 大學圖書館分野 改正(新設)案의 骨子

1. 圖書館法

- 1) 學校圖書館에서의 分離獨立(3~5條)
- 2) 分離獨立에 따르는 條文의 新設

① 大學圖書館의 定義(3條3項)

「大學圖書館이라 함은 大學(校), 初級大學, 教育大學, 師範大學 및 專門學校와 이에 準하는 各種學校에서 圖書館資料를 蒐集, 整理, 保存하여 學生 및 敎員의 學習, 敎養, 調查, 研究 및 테크네이션 등 그 이용에 供함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을 말한다」

② 施設·資料·運營基準의 大統領令化(4條3項)

③ 司書配置, 養成의 大統領令化(5條)

④ 大學圖書館 設置, 職員, 利用의 規程을 獨立「章」化(26~28條)

26條(設置) : 省略

27條(職員) : 大學圖書館에는 敎授待遇의 專門司書와 司書를 두어야 한다.

28條(一般利用에의 提供) : 大學圖書館은 그 目的達成

에 支障이 없는 限 一般公衆이나 特定團體의 利用에 提供할 수 있다.

※大學設置基準令 第11條의 圖書館法施行令化

※제11조 도서관의 설비와 도서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2. 圖書館法 施行令

1. 열람실·정기간행물실·서고·사무실을 갖출 것.
2. 열람실에는 학생정원의 15퍼센트 이상을 수용할

1) 施設·資料·運營基準의 施行令化(2條2項, 別表)

(別表 2) 大 學 圖 書 館 基 準

建 物	① 專門學校, 初級大學은 400坪 以上					
	② 大學(中央圖書館을 利用할 수 없는 位置에 있는 大學校의 單科大學은 이에 包含한다)은 獨立建物로 서 500坪 以上					
③ 大學校는 獨立建物로서 2,000坪 以上						
施 設	學校別	專門學校, 初級大學	大	學	大 學 校	摘 要
	施設別					
	일 람 실	學生定員의 15%를 收用할 수 있는 座席				
	參 考 圖 書 室	學生定員의 1.5%의 座席으로 開架制로 하고 一般의 特殊的參考質問에 解答을 提供할 수 있도록 充分하고 균형잡힌 참고도서를 확보한다.				
	시 청 각 실	1. Screen 2. Slide Projector 3. Film Strip 4. Tape Recorder	1, 2, 3, 4項은 左와 同 5. Microfilm Slide Projector 6. Movie Projector	1, 2, 3, 4, 5, 6項은 左와 同 7. Over head Projector 8. Opaque Projector		
	복 사 실 (인 쇄 실)	복사기 1臺 以上				
	대 출 실					
資 料	정 기 간 행 물	고양잡지 10種 以上 학술잡지 50種 以上	고양잡지 10種 以上 학술잡지 50種 以上 단, 의과대학은 200種 以上	고양잡지 10種 以上 학술잡지 (학 이공계 10種 以上 과당) 의학과 200種 以上	有料雜誌만을 種數에 包含한다.	
	장 서	大學의 2/3	1人當 30卷으로 하되 學科當 基本圖書는 다음 과 같다. 1. 人文系 4,000種 2. 理工系 3,000種 3. 藝能系 1,500種		① 理工系圖書는 改定版이 出版되면 卷數에서 除外한다. ② 계본된 잡지는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 료 비	자료비는 그 대학 전 예산의 3% 以上을 配정하여야 한다.					
직 원 의 배 치	인 원	사서 3인 以上 기타 3인 以上	전문사서 1인 以上 사 서 4人 以上 기 타 5人 以上 但, 醫科大學은 전문 사서 2名 以上	단과대학別로 전문사서 1人 以上 사 서 1人 以上 기 타 2人 以上	① 전문사서는 그 대학의 교수임용규정에 의거, 임면 및 승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가능한한 전문사서는 해당 대학에 관 계되는 주계전공을 가진자로 임명한다. ③ 준사서는 기타 직 종에 포함한다.	
		利指 用導 신입생에게 30시간 以上의 이용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도서관학 개론 ② 문헌 검색법 ③ 서지학 ④ 논문작성법 ⑤ 기타 도서관 이용지도				

수 있는 좌석을 설치할 것.

- 3) 도서는 학생 1인에 대하여 30권이상으로 하되, 학과당 5,000권이상과 학술잡지 5종이상을 비치할 것. 다만, 조금대학(의예과를 포함한다)과 교육대학에 있어서는 각기 3분의2로 한다.

위 11條를 위의 [別表 2]와 같이 改正案化함.

- 2) 司書의 配置基準(現行6條)을 改正하여 前記 [表]에 一括 表示케 함(5條)

- 3) 專門司書規程의 新設(3條)
(專門司書의 資格)

① 正司書로서 碩士以上の學位를 所持하고, 圖書館實務經歷 6年以上인 者.

② 正司書로서 圖書館에 관한 研究實績 및 圖書館實務經歷 10年以上과 圖書館學에 관한 論文 3篇以上을 發表한 者.

Ⅲ. 條目別 管見

가. 圖書館法

1. 大學圖書館의 定義(3條3項)

各種圖書館의 定義를 내림(매김)에 있어서 그 特徵만을 달리 表現하는 것은 當然하다. 學校圖書館과 大學圖書館은 相當한 共通點이 있는데 學校圖書館 定義에는 『…供함으로써 學校教育課程展開에 寄與함과 동시에 그 利用指導를 實施하는 學校의 施設을 말한다』가 追加되어 있어 教育機關임을 特徵의으로 나타냈는데 大學圖書館 定義에는 없다. 施行令에 利用指導를 規程化하였으며, 大學圖書館 오늘의 課題인 課題圖書室, 卒業論文指導, 圖書館教育의 實施等을 생각할 때 이 部分을 追加하였으면 좋겠다.

2. 大學圖書館의 設置, 職員, 利用規程(26-28條)

大學圖書館을 「章」으로 獨立시키기 위하여 新設한 本條項에서 設置義務의 規程(26條)는 大學圖書館 定義와 맞게 『…專門學校와 “이에 準하는”』 文句가 삽입되어야 하고, 27條의 教授待遇의 專門司書規程은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28條의 一般利用이나 特定團體에 대한 奉仕義務는 너무 消極的이다. 韓國과 같이 公共圖書館이 不足한 實情에서는 大學圖書館의 設立目的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좀 더 積極的으로 奉仕할 義務를 지워야 한다.

即, 『大學圖書館은 그 目的達成에 크게 支障이 없는 限 一般公衆이나 特定團體에 奉仕할 義務가 있다』로 改正하는 대신 公共圖書館이나 學校圖書館처럼 國家補助 條項을 追加함으로써 大學圖書館도 國家의 補助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야 할 것이다. 現在로서는 他校 大學生에 대한 奉仕도 어려운 立場에 있지만

大學 特히 私立大學의 公共性도 認識해야 한다.

나. 圖書館法 施行令

무슨 法律이든지 그 施行令이 具體化되어야 効力이 있는 것처럼 圖書館法도 그 施行令에 焦點을 두어야 한다. 便宜上 施行令改正案의 順序와 圖書館 要素別로 簡單하게 言及하였다. 本施行令案이 現行 大學設置基準令과의 關係가 特別法과 普通法의 關係인지 아니면 大學設置基準令을 改正하여 『圖書館에 관한 基準은 圖書館法施行令에 따른다』로 할 것인지에 관한 專門의 見解를 밝힐만한 知識은 없기 때문에 同設置基準令을 改正한다는 見地에서 便宜上 言及할 수 밖에 없다. (또한 [表]로 되어 있는 것을 條文式으로 形式을 바꾸는 問題도 一段 省略한다)

1. 施設基準

1) 建物: 建物の 坪數를 몇坪以上으로 하고 獨立建物(專門·初大除外)로 해야 한다는 規程은 新設로서 最少限 몇坪이 理想的이나 하는 客觀的인 研究를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建物條項을 規制事項에 넣었다는 事實만을 想起시킬 뿐이다. 坪數도 設計에 따라서는 그 物量에 있지 않고 實用性에 있는 만큼 難題가 있는 것이다.

2) 一般閱覽室: 現行 大學設置基準令에 閱覽室로 애매하게 表現했던 것을 具體的으로 特殊閱覽室(參考室)과 區分한 것은 잘된 것이나 座席基準의 學生定員의 15%를 그대로한 것은 조금 아쉽다. A.L.A.案이 1/3인데 1/4인 25%로 하든지 1/5인 20%쯤으로라도 改正했으면 싶다.

3) 參考圖書室: 定期刊行物室 대신 參考圖書室로 名稱을 바꾸고, 그 規模(座席)를 1.5%로한 것은 새로운 것이나 1.5%는 一般閱覽席數의 1/10인 算術的 基準같기도 하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2%~2.5%로 늘려야 할 것이다. 또한 定期刊行物도 參考室에 可及的인 併置하는 勸告文句도 삽입했으면 한다.

4) 視聽覺室: 圖書館概念의 擴大라는 意味가 있고, 特定基本資料名을 羅列했는데 視聽覺機器에 대하여 잘 모르긴 하나 Language Laboratory, C.C.T.V.(大學校만이 아니다)까지도 包含시켰으면 좋겠고, 圖書館과 別個 獨立機關으로 있는 것과의 關係表示를 摘要欄에 삽입했으면 한다.

5) 其他: 省略

2. 資料基準

1) 定期刊行物: 大學圖書館 資料中 가장 重要한 學術雜誌에 대한 基準이 學科當 5種以上(初專 2/3)에서

系列別로 種數를 增加시킨 것은 理解가 가나 種數나 冊數의 規制는 尙상 副作用이 따른다. 參考삼아 몇몇 大學校에 문의해 보았더니 資料購入費의 50%가량을 外國學術雜誌購入에 割愛하고 있다. 이러한 實情으로 볼 때 種數를 規制하여 別價値가 없는 많은 雜誌를 購讀하여 法定數值를 채우려는 副作用을 막기 위하여서도 資料購入費의 50%以上(系列別細分도 考慮하여)을 配當하라는 規程으로 改正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藏書 : 1人當 30卷, 學科當 5,000卷이라는 大學設置基準이 있어 副作用을 防止하기 위하여 系列別 種數를 明示한 것은 조금 發展의이긴하나 問題는 如前히 남게 되어 있다. 卽 一定한 種數에 이르면 改正版만 購入해도 된다는 理論이 成立되고 種數를 채우기 위한 副作用은 마찬가지로 大다. 資料購入費를 다음項과 같이 規制만 해준다면 藏書構成은 圖書館 裁量에 맡겨야 한다. 法定 冊數나 種數가 藏書構成 政策에 無意味한 作用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3) 資料費 : 總豫算의 몇%가 適正線이나 하는 것은 研究가 必要하겠지만 %制度로 明示한 것은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이 規程만 強力히 執行된다면 前項의 規制는 큰 問題가 되지 않는다.

3. 司書職員의 配置

現行 規程은 學生數 500人以下인 때에 2名, 800名을 超過할 때마다 1名을 增員하게 되어 있는 것(6條3項)을 前記[表]와 같이 改正하였는데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 特히 專門司書의 配置를 나타낸 것은 大學圖書館의 特性을 살리는 길이며 切實히 要望되는 事項이다.

4. 利用指導

大學圖書館의 오랜 동안의 宿願이 利用教育(講座化)에 있었다. 오늘날 高等教育의 概念이 점차 變化되어 가고 있다. 知識情報은 幾何級數의으로 增加하여 教育內容은 增加하는데 教育年限이나 講義時間을 比例하여 延長할 수 없기 때문이다. 實驗大學을 통하여 試圖하고 있는 課題學習은 그 解決方法인데 課題學習이 目標하는 理想中의 하나는 學習方法의 改善를 통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자는 것이다. 卽 오늘날의 高等教育은 最高學部라는 생각이나, 專門家養成이 아니라 卒業後에도 계속 成長할 수 있는 能力 卽 基礎教養教育이 中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平生教育 또는 生涯教育으로 表現되는 自律的 自己教育을 위한 基礎教育으로서 圖書館 및 文獻利用法, 論文作成法을 교양교육으로서 講座化해야 한다는 것이 重言의 餘地가 없다. 本改正案이 『30時間以上의 利用指導를 實施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30時間이면 事實上 1學點이

넘는 時間이다. 그러나 1學點以上으로 하는 것이 30時間以上으로 하는 것보다는 教育의 效果面에서 바람직하다. 그 重要性으로 보아서는 2學點以上으로 했으면 하는 慾心이 있다.

5. (專門)司書의 資格

大體로 바람직하나 正司書資格中 專門學校 圖書館科出身 準司書에 대한 配慮가 없는 것이 아쉽다. 筆者의 생각으로는 專門學校出身 準司書는 圖書館實務經歷 4年이던 別途의 講習없이도 正司書가 될 수 있는 길을 더주어야 할 것이다.

專門司書가 教授對遇를 받기 위하여는 教授의 資格要件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當然하나 學位를 所持한 以後의 實務經歷 6年은 學位所持 以前의 經歷을 認定받지 못하는 모순이 있다. 改正案의 취지가 通算 6年以上이라던 文句調整이 不可避하다. 또한 講習에 대한 問題가 많이 學論되었는데 文教部令으로 定하게 되었다. 이 點이 慎重히 다루어져서 司書의 品位를 높일 수 있어야겠다.

IV. 맺 음 말

圖書館法에 관한 남다른 專門知識이나 關心도 크게 없었던 門外漢이 大學圖書館에 勤務하였다는 因緣으로 해서 大學圖書館分野와 直接關係가 있는 部分의 改正案을 中心으로 走馬看山式 管見을 적어보았다. 他館種에 比하여 比較的 發展한 分野가 大學圖書館이고, 圖書館法의 改正의 必要性이 또한 比較的 그 切實度가 크지 않은 分野이기 때문에 本改正案에 있어서 公共圖書館이나 學校圖書館의 比重이 큰 것을 當然之事로 보는 立場에서 大學圖書館의 基本條件이며, 當面課題解決의 關鍵인 豫算(藏書·定刊物), 專門司書, 利用指導에 관한 部分이 改正案에 나타나 있는데 筆者로서는 以上과 같은 意見밖에 言及할 수 없었다.

圖書館法이 어느 程度의 拘束力을 가지느냐 하는 問題에 있어서 現在의 大學設置基準令의 實効性이 이미 證明된 마당에 심히 괴로운 點이 있다. 法律이 아무리 理想的으로 制定되어도 主務監督機關의 專門的인 關心 없이는 所期의 目的을 이루기 어렵다. 大學圖書館의 監督機關인 文教部에 圖書館局이 設置되어야 한다는 館界의 興望이 어떻게 實現되느냐하는 가장 큰 問題가 남아 있다. 現在로서는 改正案의 罰則을 擴大하여 大學圖書館分野만이라도 實質의으로 強制規程化 했으면 하는 慾心이 앞선다. 門外漢의 門外漢的 管見에 대하여 寬容을 바라며, 本稿가 紙上公聽會를 대신하는만큼 關係諸賢의 意見이 最大한 集約되도록 많은 關心을 表明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